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!

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,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에 비추어 동물복지위원회
위원의 자격을 조정하는 한편,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로
의료기관을 추가하며,

동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반려동물 상실증후군의
예방 및 완화 지원을 추가하며, 구청장에 대한
동물보호업무 지원 사항으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
사업 실시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○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살피주시고, 시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